

지방의회 중계식

‘봉무단지 조성’ 법적 근거 논란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

7일 열린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의 경제산업국 심사에서는 총사업비가 1조2천500억 원 (용지조성비 4천억 원, 시설공사비 8천500억 원)으로 늘어난 봉무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법적근거가 논란이 됐다.

김충환(북구4) 부의장은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이하 ‘산지법’)으로라면 대구시가 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주체로 선정한 ‘밀란시티’가 건축 사업을 할 수 없다”며 건축사업이 포함된 현행 봉무지방산업단지 조성의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

산업단지내 아파트 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현행 ‘산지법’ 개정 (2조6항-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을 할 수 없다)이 이뤄져야 하는데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따라 제3섹터 방식의 단지조성 사업이 법적 근거를 담보하지 못했는데도 시가 시설공사비 8천5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밀란시티에 합의해준 것은 불법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장은 “해석하기 나름이며 시(市) 출자법인도 건축 사업을 할 수 알고 있다”고 법적 근거에 의한 사업임을 자신 있게 얘기했다. 김 부의장이 “입법예고된 것을 근거로 작년부터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난주까지 관련법 개정에서 서명한 의원이 6명에 불과, 만약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그치자 “당초 건교부 입법예고안은 시

김충환 의원 “현행법으로 사업시행자 건축사업 할수없어”

경제산업국장 “산지법 개정안 입법예고...해석하기 나름”

출자법인도 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확실해보였다”고 한 발 물러섰다.

김 부의장은 또 “산지법에 따르면 임대주택 주택 20% 건축이 의무시설 조항인데 8천500억원이 들어가는 시설공사비에 국민임대주택계획이 들

어 있느냐”고 물었다가 김 국장이 “실시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답하자 “실시계획도 없는데 3~4년 뒤에나 개통될 도로 보상하자고 빗(지방채 250억 원)을 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몰아붙였다.

산지법 개정은 지난 8월 한나라당 김석준(대구 달서병) 의원이 산업단지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건축사업 허용을 골자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국회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화기자



행정자치위원회가 7일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소관 2005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하고 있다.